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6 선고 2021나11048(본소), 2021나11055(반소) 판결 [건물인도
등 · 계약금반환 등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치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기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박노영, 김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웅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6.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19가합11780(본소), 2020가합 13195(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9면 19행의 “나. 1)항”을 “다. 2)항”으로 고친다.
- 15면 9행의 “없는 점” 다음에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23호증)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등기 등의 설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⑥ 피고는 2018. 7. 25. 법무사를 대동하여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사로부터 가등기 등 설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나 등기비용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는바(2022. 5. 10.자 준비서면 5면 참조), 제1차 계약금의 지급기일을 지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등기 등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추후에 가등기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할 만한 나름의 동기나 경제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8. 7. 25. 당시 가등기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1차 계약금을 그대로 지급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훈, 판사 오지애, 판사 류지원